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57

발의연월일 : 2023. 1. 27.

발 의 자:임이자・백종헌・金炳旭

주호영・박 진・김선교

권명호 · 최영희 · 김형동

한무경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1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 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조 제6항"을 "제112조의2"로 한다.

제162조제10호 중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을 "제112조제2항·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제112조제10항"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제26호 중 "제112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2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12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
부 비공개 승인 등) ① ~ ⑤	부 비공개 승인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	<u><삭 제></u>
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u>수 있다.</u>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u><삭 제></u>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u>제7</u>	제112
<u>항</u> 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조의2제2항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1
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u>제7</u>	<u>제112</u>

- <u>항</u>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 인을 받은 경우
- 2. 제1항, 제5항 또는 <u>제7항</u>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 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⑩ (생 략) <신 설>

<u> 조의2제2항</u>
2 제112조의
2제2항

- ⑨·⑩ (현행과 같음)
-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 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 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저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 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 3. --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조에 따른다.

세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1. • 2. (현행과 같음)

또는 <u>같은 조 제6항</u>에 따른 이 의신청

- ② ~ ④ (생 략)
-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9. (생략)
 - 10.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 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 11. ~ 13. (생략)
-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기 ① (생 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u>제112</u> 조의2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밀 유지)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12조제2항·제5항 및 제
 112조의2제2항
<u>112조의2제2항</u>
112조의2제2항 - <u>제112조제10항</u>
 - <u>제112조제10항</u>
- <u>제112조제10항</u> 11. ~ 13. (현행과 같음)
- <u>제112조제10항</u> 11. ~ 13. (현행과 같음)
- <u>제112조제10항</u> 11. ~ 13.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u>제112조제10항</u> 11. ~ 13.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 <u>제112조제10항</u> 11. ~ 13.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 <u>제112조제10항</u> 11. ~ 13.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 25. (생 략)
- 26. 제112조제1항·제2항·제5 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 41. (생 략)

③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u>제112</u> 조제1항·제2항·제5
<u>항 및 제112조의2</u>
27. ~ 4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